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5. 17 선고 2021가단14597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
말소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언

담당변호사 권성환,김강노,김치련,송희근,심찬섭

피 고 1. B

2. C

변 론 종 결 2022. 3. 29.

판 결 선 고 2022. 5. 17.

주 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 및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5. 17. 접수 제8721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 3. 10. 접수
제1352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별지 변경된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는 2005. 3. 10. D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3527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쳤고, 피고 B은 2021. 5. 17. 서울동부지방법원 제87219호로 위 가등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이전을 원인으로 한 부기등기(이하 ‘이 사건 부기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21. 9. 27.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 받아 소유권을 이전받은 소유자이다.[인정근거] 갑제1호증,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의 위 매매예약완결권은 위 예약일인 2005. 3. 10.부터 10년이 되는 2015. 3. 10.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써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제척기간 도과로 예약완결권이 소멸한 이상 시효이익의 포기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도 없으므로 피고 B의 주장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피고 적격 및 가등기 부기등기의 말소방법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등기의 이전에 의한 부기등기는 기존의 가등기에 의한 권리의 승계관계를 등기부상에 명시하는 것 뿐으로 그 등기에 의하여 새로운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닌 만큼 가등기의 말소등기청구는 양수인만을 상대로 하면 족하고, 양도인은 그 말소등기청구에 있어서의 피고 적격이 없다 할 것이고,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인 가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어서 피담보채무가

소멸된 경우에는 주등기인 가등기의 말소만 구하면 되고 위 부기등기는 별도로 말소를 구하지 않더라도 주등기의 말소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다17109 판결 참조).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 및 이 사건 부기등기의 말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3. 결 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혜승

[별지]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벽돌조 경사 슬래브위기와지붕

2층 다세대주택

1층 79.80㎡

2층 79.80㎡

지층 79.80㎡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서울특별시 강동구

대 162.5㎡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지하층 호 벽돌조 39.9㎡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대지권 162.5분의 27.08 - 문 -

변경된 청구취지

1.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가. 피고 B은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 2021. 5. 17. 접수 제87219호로 마친 2변소
유권이전청구권이전등기의,
나. 피고 C는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 2005. 3. 10. 접수 제13527호로 마친 소유
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철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